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1. 6. 22 (금) ~ 6. 28. (목)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1호
 - 구의회 사무국
- 사무의 범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1호
 - 구의회 사무국업무 전반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유남열	곽희관	박정자, 빈웅길, 손영상, 손병욱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고
2001. 6. 28 (목)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6. 감사방법

- 현황보고 및 청취 - 사무국장 보고
- 보충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답변

7.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
- 선 서
- 국장인사
- 현황보고 -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개별감사
- 공개질문답변 - 일문일답식 회의진행
- 감사결과 종합평가 및 강평

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가. 자료실 비치 도서구입 철저
- 자료실비치 도서는 철학서적 등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서의 구입은 지양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정활동 관련 참고 도서를 시기 적절히 구입할 것.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행정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를 열어 가는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1. 6. 22 (금) ~ 6. 28 (목)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2호
 - 행정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 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
박남오	반응길	강두석, 광희관, 노동우, 손영상 유남열, 이만식, 이종해, 최재웅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1. 6. 22. (금)	영등포구청 제 1 감사장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001. 6. 23. (토)		행정관리국	
2001. 6. 24. (일)		공 휴 일	
2001. 6. 25. (월)		행정관리국 재 무 국	
2001. 6. 26. (화)		재 무 국 보 건 소	
2001. 6. 27. (수)		보 건 소	
2001. 6. 28. (목)		공개질의답변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대 상	주요 감사 착안 사항	비 고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요구와 소청사항 처리 ·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 총괄 · 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종합분석 · 환경순찰 관련사항처리 · 진정의 접수처리 및 총괄관리 ·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실태 · 집단민원 및 미해결 민원총괄관리 ·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처리결과 · 재난예방 안전관련 및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 · 재난대비교육·훈련 및 홍보 	<p>현황보고 정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 지 확인</p>
<p>행정관리국 (총무과)</p> <p>(기획예산과)</p> <p>(민원봉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여행관련업무 ·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구민회관운영관리 · 인력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새마을문고 운영지도 · 새마을소독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청사 및 차량 등 주요장비 관리총괄 · 전시 민방위 및 전시운영체계 · 민방위운영 및 인력동원 총괄 · 민방위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 행정서비스 운영기본계획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 규제개혁 및 공무원 제안제도 주민창안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 총괄 · 예산의 집행계획 및 집행관리 · 지방채 및 기금운용관리 ·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 · 행정심판, 소송업무의 총괄관리 및 조치사항 ·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 · 전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 · 각종 인·허가증 교부 · FAX 민원처리 · 호적 전산화 추진현황 · 보조문서 관리실태 · 공공요금(우편료) 집행현황 	

대 상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비 고
<p>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p> <p>(여 권 과)</p> <p>(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등록 및 지도감독 · 신문구독료의 적정집행사항 · 각종 홍보물 발간업무 · 유기자업(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 민간단체의 해외교류사업 지원 · 국내외 도시 및 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중국, 일본, 고성군, 청양군, 영암군) · 구민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대회)에 관한 사항 ·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된 사항 · 영등포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여권 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 공백 여권 수불관리 · 분실 또는 소실반납 신고접수 및 전산처리 ·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조직 및 운영 · 취학 기타 학무 · 주민등록 및 인감 · 도로명 제정 및 도로구간 설정업무 · 건물 번호부여 업무 · 불법 및 혐오광고물 철거 · 유동광고물 등 수거·고발·과태료 부과 · 광고물 신고 허가 및 양성화 등 업무 · 시범로 정비 	<p>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 지 확인</p>
<p>재 무 국 (재 무 과)</p> <p>(세무관리과)</p> <p>(부 과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 행정재산의 총괄관리 · 공사도급·물품구매계약 등 ·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 수입증지 수불관리 · 물품관리 및 공사물품 입회 · 과오납금 환불결정 결의 및 통지 · 시·구세의 시효 및 불납결손처리 · 시·구세의 체납세액 징수 및 재산압류 ·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처리 · 시·구세의 수입의 총괄관리 · 시·구세의 징수포상금 집행현황 · 지방세 체납조회 실적 · 시·구세에 관한 과세자료관리 · 과세대장정리 및 관리 ·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처리 ·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책정 및 시가조사 · 개별 공시지가 적용비율결정 및 수정 · 법인의 시·구세에 관한 세원조사 	

대 상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비 고
<p>보 건 소 (보건위생과)</p> <p>(보건지도과)</p> <p>(의 약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실 운영,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및 점검 ·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각종 신고사항 처리 ·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보건기획 및 물품장비관리 ·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처리 · 무허가 식품 위생업소 감시 · 이·미용사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육 및 모자보건사업 · 성교육 및 가족계획사업 ·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사업 · 에이즈 예방사업 · 각종 신고사항 처리 · 방역대책수립 및 방역약품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업 · 약사법(약국) 관련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 각종검사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 · 의료법(병·의원)에 관한 사무 · 의료업소(의료기관,안경업소,치과기공소) 지도점검사항 · 보건소용 의약품 구매 및 관리현황 	<p>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지 확인</p>
<p>(주민복지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 및 변경신고 · 대여양곡 상환금 채납자 관리 · 민방위 업무 · 주민등록 전산관리 현황 · 주민복지센터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주민복지센터 전환 후 문제점 및 대책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8.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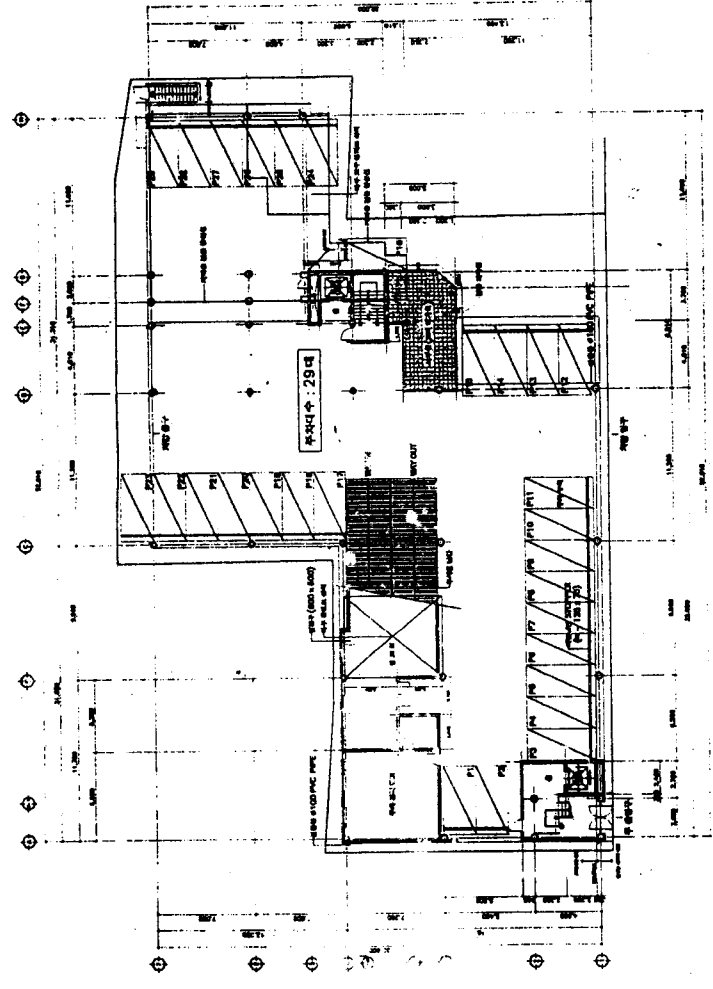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p>제목 : 방위협의회 미구성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2001.1.10)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제9조에 의거 정비 완료토록 전동에 지시했지만(2000년도 지적사항)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동이 3개동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아직까지 미정비한 3개 동장에게 시한부로 정비토록 조치하고 결과 보고할 것.</p>	
치 수 과	<p>제목 : 도림천 자전거 도로시설 개선 도림천에 자전거 도로 및 운동시설은 제반시설 부족으로 전시행정으로 방치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간 부분(도림교 입구)에 장애인 및 일반인 자전거 출입시설 설치틀 요망함</p>	
총 무 과	<p>제목 : 자율방법대 보조금 지급 신길6동 자율방법대 2001년 3월에 발대식을 하였으나, 2001년 1~2월분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월 200,000원×2개월분 = 400,000원</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이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결과조치 할 것</p>	
각 동 장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p>제목 : 구 보조금 받고있는 직능단체 정산 미흡 영등포1동의 16개동(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금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 청소년 지도협의회, 자율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금의 1/4분기 정산서가 공중이 되지 않는 영수증(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등)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정산부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 후 결과보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p>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제목 :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부당 증축 허가</p>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단위 주차장의 너비는 2.3m이상 길이는 5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6m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 증축 신고시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를 사전검토하여야 함에도,</p> <p>영등포2동사무소에서는 2000.7.31 영등포동 4가 431-6 및 432-11(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신고한 업무시설 36㎡ 증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적과) 일반건축물 관리대상 장번호(3-) 1층 평면도 도면상, p22 주차선 옆 기둥의 중심과 출입구 쪽 기둥중심 사이가 11.2M이므로 철골조 보강기둥 두께를 감안할 때 사실상 기둥 내측 거리는 10.8m이다.</p> <p>그러므로 출입 통로 폭 6m를 제외하면 p22 주차 구획은 그 길이가 4.8m밖에 나오지 않아 주차장법에서 적용한 충분한 길이 5m를 확보할 수 없음에도 같은 해 8.24 증축 신고 처리하고 같은 해 9.14 일반 건축물 관리대상(영이58550-1291 2000.9.7 증축)에 등재한 사실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주차장법 위반 사항 시정 조치 및 업무 소홀 공무원 조치</p> <p>*서류첨부 -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된 도면 1층 평면도 1부 증축신고당시 첨부된 도면 1층 평면도 1부</p>	
<p>건 축 과</p>	<p>제목 : 주차장 전용빌딩의 위법 증축</p> <p>2000.7.31 영등포동 4가 431-6외 4필지의 증축신고 처리한 과정을 보면 건축관리대상 1층 평면도 (장번호 3-) P23 주차면은 진입이 법적요건에 못 미치며 P12, 13, 14, 15 주차면의 설계도면은 옥내주차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옥외주차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증축신고시 도면상 위법 주차빌딩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시정조치는커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처리한 사실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관계공무원 문책 및 시정조치</p> <p>첨부서류 : 사진 2매</p> <p>*참고 : 신고시 도면과 건축물 관리대상 확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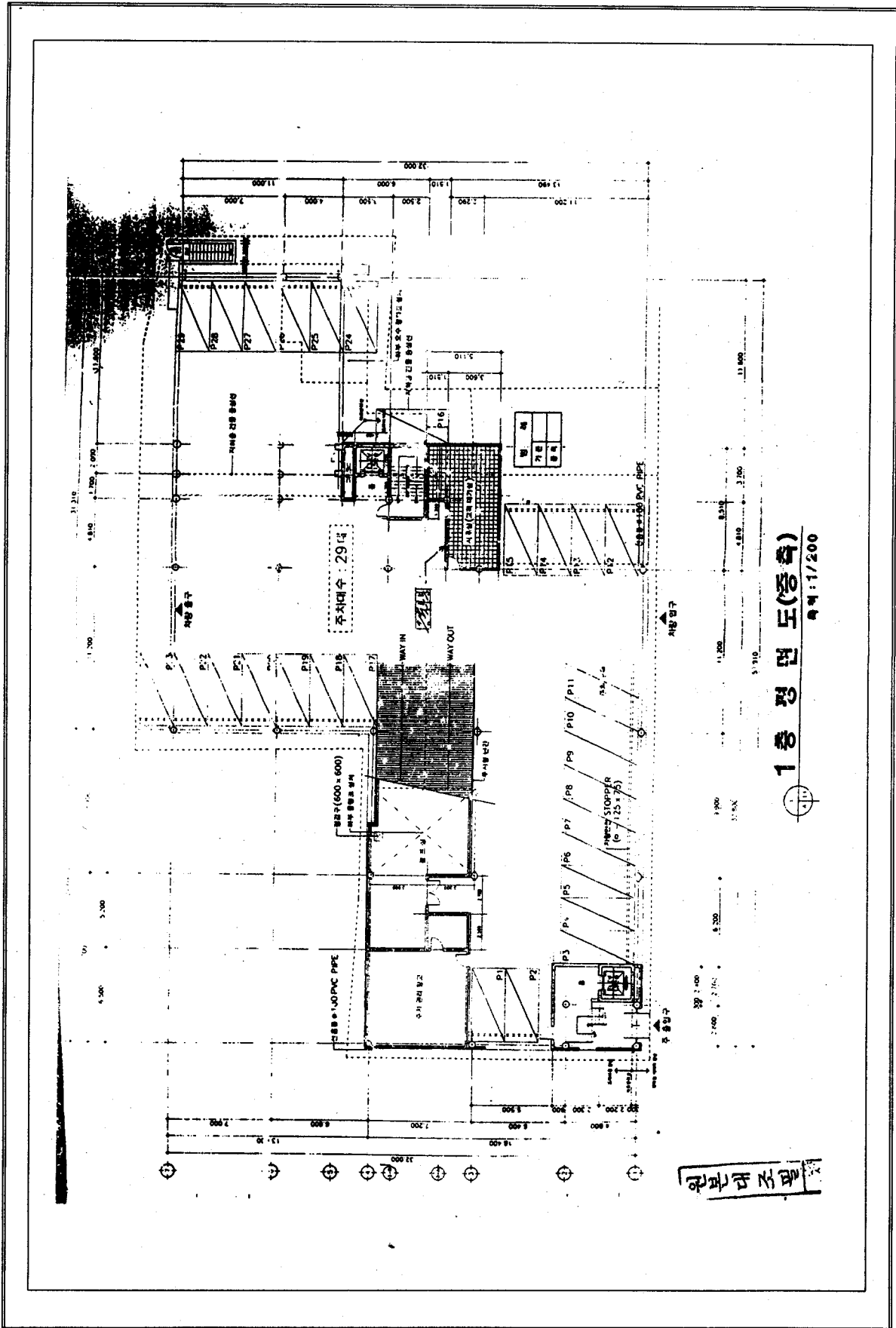
건 축 물 현 황 도

상 번호	3-
주요사항	
명칭 및 번호	431-6, 7, 12, 13 432-11
지 번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대지위치	
규모번호	



도면의 종류	1층 평면도	축척	1: 400	도면작성자	보인 건축사 사무소 이준원	서명 또는 인
--------	--------	----	--------	-------	----------------	---------

비고 1.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총괄표제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제목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내용 기재 확인 소홀 및 불필요한 서류 첨부</p> <p>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수리시에는 건축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1항 별지 1호 규정된 내용을 일체 표기하여야 하고, 민원 사무처리에 간소화 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다른 첨부서류는 부착하지 말아야 함에도 영등포동 4가 429-9 김진현(신세계 백화점)이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는 구비서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식에 맞지 않는 문서를 조작하여 평면도를 누락시키고 불필요한 지적도면을 첨부시켰음에도 보완 조치없이 영등포2동사무소에서는 2000.8.1 신고 접수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같은 해 8.24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평면도를 부착하게 되어 있음에도 평면도를 누락시켜 처리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내용을 원인 무효조치하고 업무물 소홀히 한 공무원 처벌 바람.</p> <p>*첨부서류 : 김진현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지적도면 사본</p>	
<p>건 축 과</p>	<p>제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 사무처리 소홀</p> <p>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별표2>에서 규정한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구비 검토하여 수리하여야 함에도 영등포동4가 429-9번지(이하 “동일지번”이라 함)상, (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제출한 가설건축물(이하 “동 건축물”이라 함) 축조신고서 수리시 다음과 같이 위법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었음.</p> <p>1. 동 건축물의 축조신고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이전에는 무허가인 불법건축물로서 본 위원이 1999년 11월 의화 행정사무감사시 불법건축물로 지적하자 2000년 1월초 철거 조치하였음. - 2000년 1월 25일 동일 지번 내에 동 건축물축조신고(용도:제품야적장)를 영등포 2동에 접수, 당일 신고 수리하였음 - 2000년 6월 16일 동건축물의 용도를 제품야적장으로 신고하였으나 쓰레기야적장으로 사용하므로써 재철거조치. - 2000년 8월 1일 동일 지번에 동 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재접수되자 8월 24일 수리하였음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2. 위법 부당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1월 25일 동일 지번에 동 건축물의 축조신고 수리행위를 하면서 법적 규정서식이 있음에도 구 비서류에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서식을 받아 수리하였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접수시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인 평면도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토 수리하였고, - 민원사무처리 간소화 지침에 의거 민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아야 함에도 동 건축물의 신고 수리시 불필요한 지적도가 첨부되었으며, - 또한 동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전용함에 철거를 조치하자 동일 지번에 또 다시 2000년 8월 1일 동 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접수되어 8월 24일 수리하면서 기본설계도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법적규정서식(개정 2000.7.4)이 아닌 개정 1999.5.11이라는 조작된 임의서식을 사용하고 평면도를 누락시켰으며 역시 불필요한 지적도를 첨부한 사실이 있음.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1999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무허가로 지적 당한 장소에 2회에 걸쳐 평면도를 첨부하지 않았고, 또 법정규정 서식(개정 2000.7.4)에 어긋나는 조작된 임의서식을 사용했음에 부당하므로 이를 신고처리한 관계공무원 징계조치 및 신고처리 취소하고 철거 요망</p> <p>*첨부서류 : 2000.1.25 접수한 조작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2000.8.1 접수한 조작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법정규정 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지적도 2부</p>	
<p>건 축 과</p>	<p>제목 : 위법 건물 구간 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처리</p>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규정에 차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진출입부분에는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영등포동4가 429-9 건축물 주차장 출입구부분에는 2개의 고정기둥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법규를 위반한 위법건축물로 동 번지에는 일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영등포2동사무소에서는 2000.8.1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접수받고 2000.8.24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p> <p>현행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 요망</p> <p>첨부 : 출입구 부분 기둥 장애물 사진 2매</p>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7·4>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건축 <input type="checkbox"/> 허가사항변경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지역 /
	지구	/	구역 /
I. 전체 개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m ²)		건축단 (m ²)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m ²)		용적률(%)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관 거 범 규			
건축법 제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중축의 경우 그 중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중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중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5조제1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3C304-24652인
98.12.28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5면중 제3면)

II. 동 별 개 요		* 는 중축의 경우 추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동별개요	
<input type="checkbox"/> 주건축물 <input type="checkbox"/>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input type="checkbox"/> 주건축물 <input type="checkbox"/> 부속건축물	
	①부명, ...		
	주 소 도		
<input type="checkbox"/> 호 <input type="checkbox"/> 가구	* 호수/가구*	<input type="checkbox"/> 호 <input type="checkbox"/> 가구	
	주 구 조		

장소 : 영등포동 4가 429-9 (제품야적장)

1. 무허가로 건축
2. 1999년말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
3. 2000년1월초 철거조치
4. 2000.1.25 : 신고 접수 -> 당일 신고처리 완료
5. 2000.6.16 : 제품 야적장의 용도로 신고처리된 곳을 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재철거
 - *-평면도 미부착
 - *-법정규정 서식에 어긋나는 신고서식 임의적 사용 (배치도, 평면도가 없는 임의서식 조작)
 - *-불필요한 서류(지적도)첨부
6. 2000.8.1 : 재신고 접수 -> 8.24 신고처리 완료
 - **문제점 - 평면도 미부착
 - 법정규정 서식에 어긋나는 신고서식 임의적 사용 (배치도, 평면도가 없는 임의서식 조작)
 - 불필요한 서류(지적도) 첨부
7. 동일장소의 제품야적장을 법적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신고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위법임.

(별지 제 8 호서식) <개정 2000. 7.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지현황	대지위치		
	대지소유구분 <input type="checkbox"/> 분 <input type="checkbox"/> 타소유면적(m ²)		
I. 전체 개요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구조용	도적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수
건축법 제15조제 2 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15조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가설 가설건축물 · 장애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가설천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30304-26411민
98. 12. 28 제정승인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신고번호

건축주	성명	주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주민등록번호	법인 110111-0028848	전화번호	02-2639-104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34-5 번지		
대지현황	대지위치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4가	지번	429-9 번지
	대지소유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소유 <input type="checkbox"/> 타인소유	면적(㎡)	

I. 전체개요

건축면적(㎡)	26.5 ㎡	연면적(㎡)	26.5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등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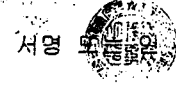
등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샌드위치판넬	제품 야적장	26.5 ㎡	26.5 ㎡	1 층

건축법 제 15 조제 2 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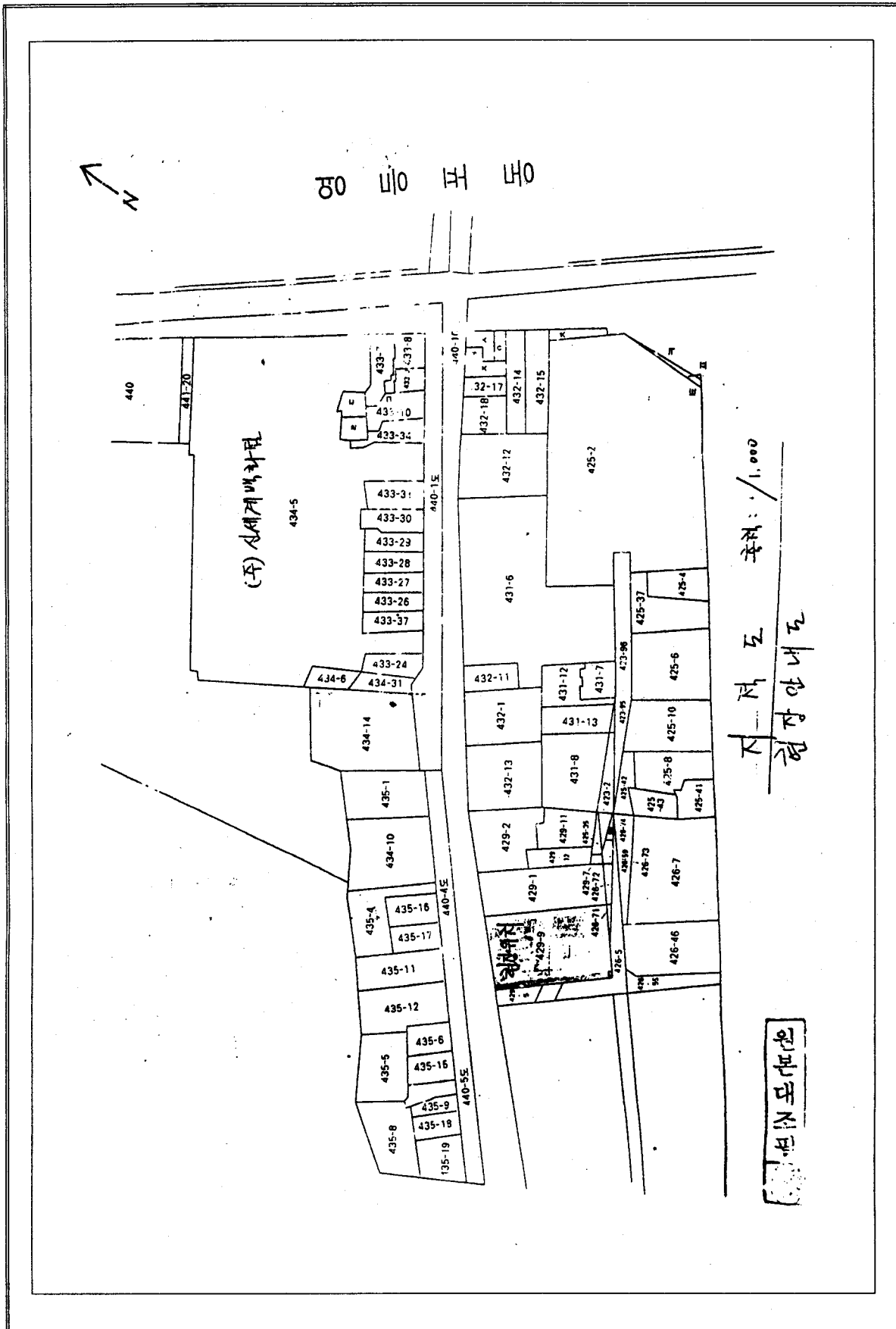
2000년 9월 일

서명

인본대조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 8 조 서식] <개정 99-5-1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신고번호	
건축주	신원	(신)신세계백화점 양동점점	
건축물용도	번호 110111-0028848	신고번호	02-2339-104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34-5 번지		
대지현황	대지위치	대지면적(㎡)	42.19
	대지소유구분	대지소유권자	신원(개)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26.5	면적(㎡)	26.5
종가	2002년 01월 24일까지		

II. 축조별 개요

종류	구분	종류	건축면적(㎡)	면적(㎡)	층수
	샌드위치판넬	외벽외장	26.5	26.5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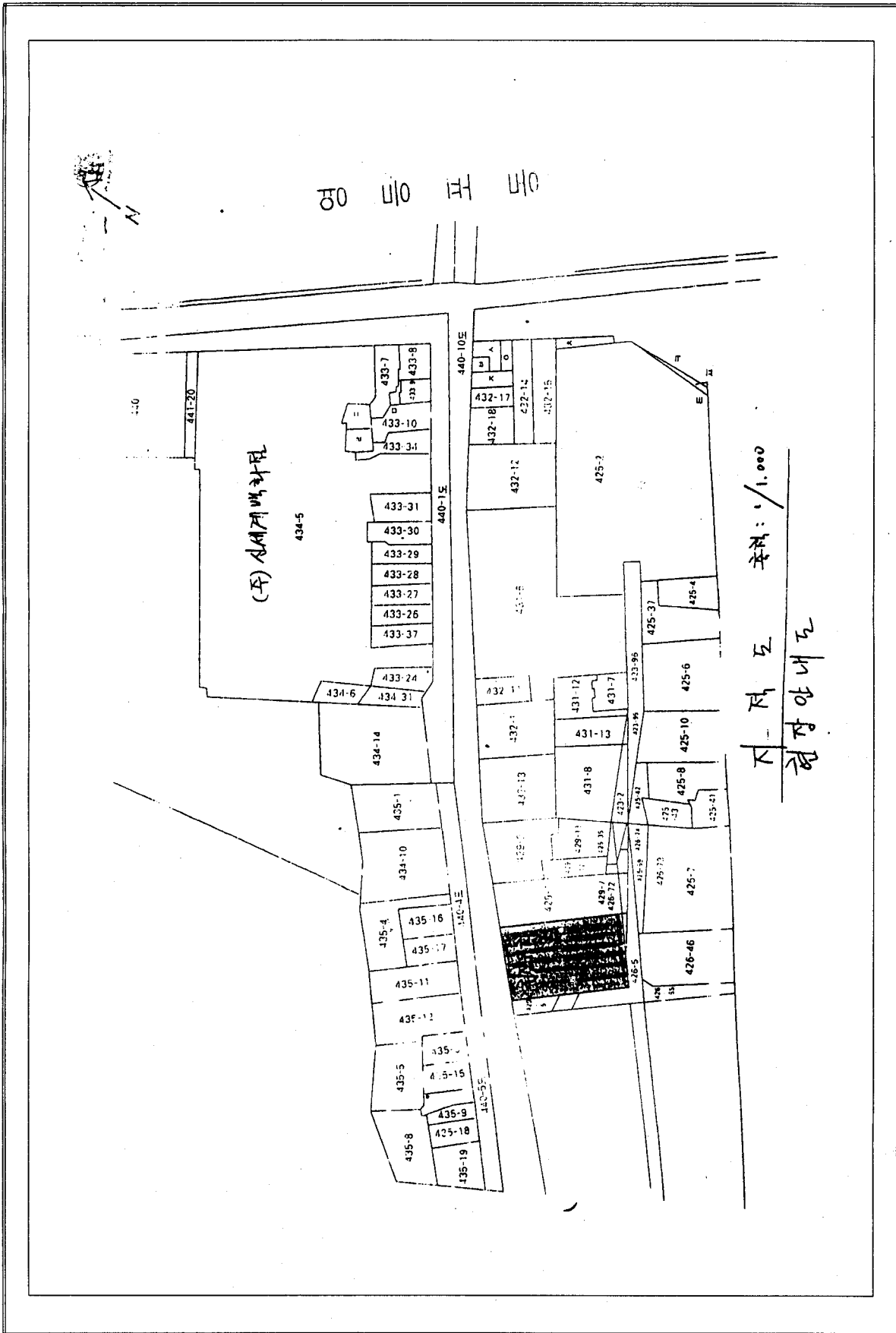
건축법 제 15 조 제 2 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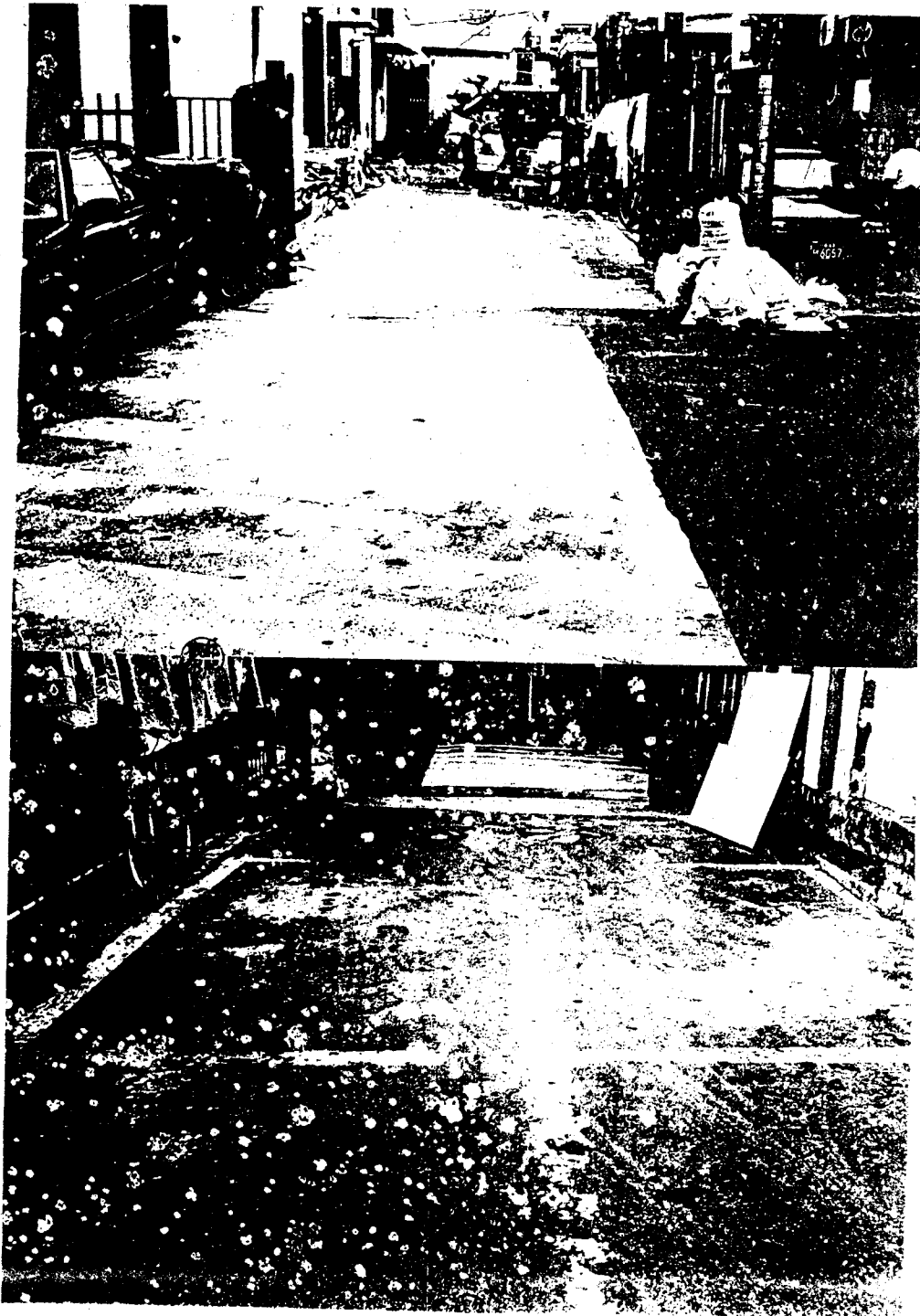
2000년 1월 25일

건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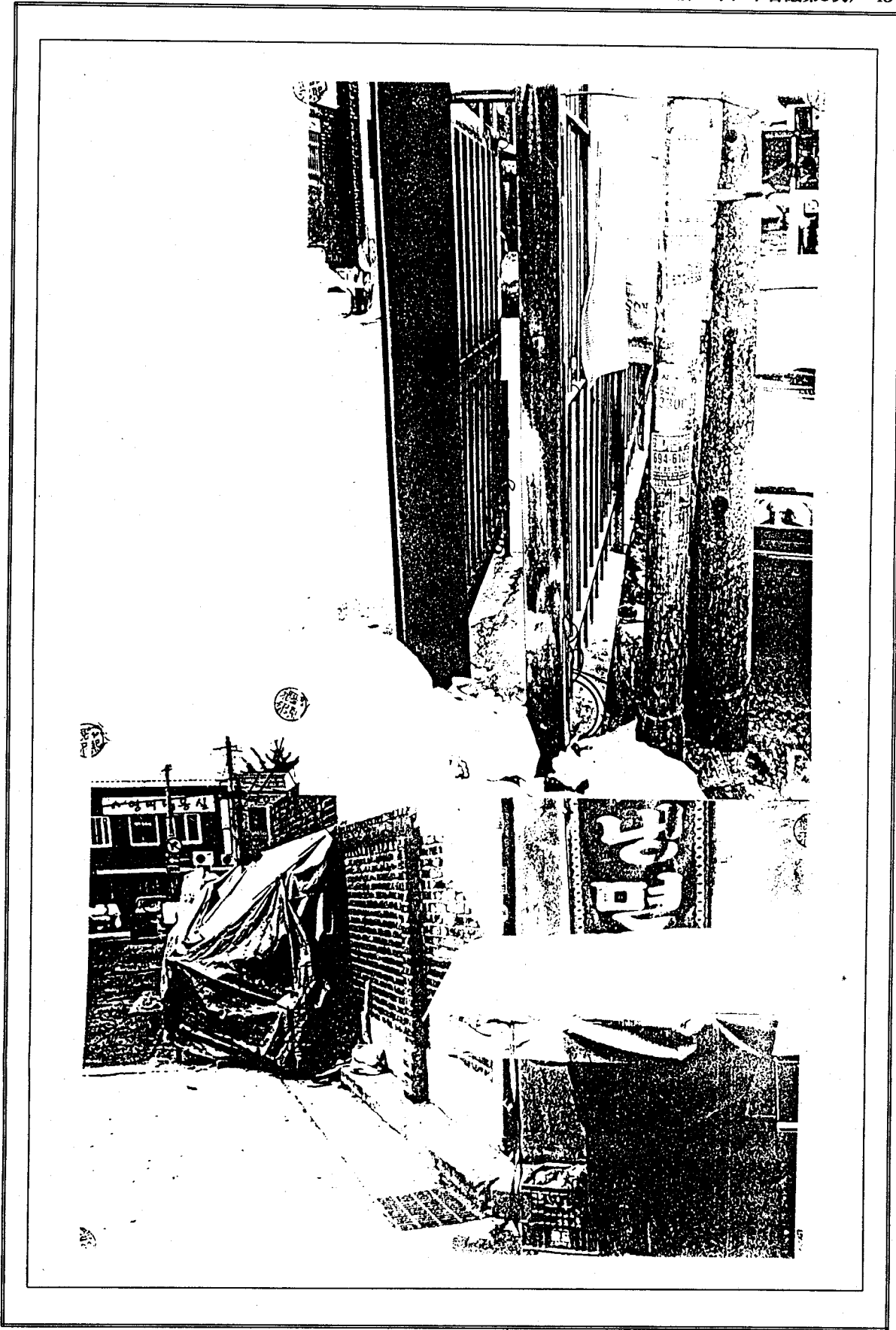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원대외건설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제목 : 도로 경계석 위의 불법 주차장 담장 구조물 설치</p> <p>영등포동 4가 429-9 지상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설치당시부터 그 폭이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최소 규정에 미달되어 위법한 건축물로 되어 있는 바 건축주 김진현(신세계백화점)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폭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1월 17일 담장을 철거한 후 도로와 대지경계선 사이의 경계석에 불법 철재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차장 폭이 미달되어 폭 확보를 위해 담장을 철거하고도 여전히 그 폭이 부족하자 경계석 위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불법철제담장과 불법가설건축물 철거조치 및 관계공무원 문책 요망</p> <p>*첨부서류 : 경계석 위의 불법 철재구조물 사진 1매 경계석과 담장을 확인하는 사진 1매</p>	
<p>건 축 과</p>	<p>제목 : 공문서 변조</p> <p>2001.6월 23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된 영이 58550-1112(2000.7.31)호 문서 자료를 제출받아 원본과 사본을 검토하던 중 문서의 내부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부분을 지적하자, 당연한 행정행위로 주장을 하다가 원본의 2000.7.31일자 결재가 완료된 문서 일부의 수정부분(삭선)에 2001.6.23일 11시경 맹남재(지방건축서기보)는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바 있으며, 그 기안 문서 수정경위는 결재과정에서 우영철 담당주사가 자필로 삭선을 긋고 수정하였다고 하므로 이항우 사무관이 결제한 문서에 최초 발생한 2000.7.31일과 행정사무감사기간 2001.6.23일의 약11달 경과 후 날인한 문서는 공문서 변조라고 아니할 수 없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바람</p> <p>첨부서류 : 날인 전 1부 날인 후 1부</p>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입니다”

영 등 포 2 동

우150-00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2 / ☎ (02) 3667-200073 / 팩(02) 678-6081
 치리과서 영등포제2동사무소(1층) 동장 이창우 / 주무 주영철 담당 명남대

문서번호 영이58550- /// >
 시행일자 2000. 7. 31. (년)
 경유
 수신 ~~수신차함조~~ 내보김지
 참조 (제1안)

취급		동 장
보존	년	- 이 창우
		주 무 주영철
기안	김영재	합조
심사자	김영재	심사일 2000. 7. 31

제목 건축신고(증축)에 따른 협의

1. 우리 동 관내 영등포동4가431-6외4필지상 건축물에 건축신고(증축)가 접수되어
 관내법인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건축물 현황

- 대지위치:영등포동4가431-6,7,12,13,432-11
- 대지면적:1,464.00㎡,건축면적:1,086.83㎡,연면적:7,170.44㎡
- 간폐율:74.23%, 용적율:479.87%
- 주 용도:주차전용건물
- 지역지구: 군공업지역,상세계획구역

나. 신고현황

- 건축면적:36.22㎡,연면적:36.22㎡
- 용도:업무시설
- 구조: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다. 협의사항

- 상세계획구역안에서 건축신고(증축) 관계처리에 대하여 협의 >도시관리과
- 소방법관계 협의에따른 관할소방서 통보.

- 첨부 1. 건축신고서 사본1부(도시관리과).
 2.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사본1부(영등포소방서) 글.

영 등 포 제 2 동 장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입니다”



영 등 포 2 동

TEL 02-3667-2222 FAX (02) 3667-2900-3 전송(02) 678-4081
주소 영등포구 영등포로1가길 11 영등포구청 1층 110호 우영원 / 담당 명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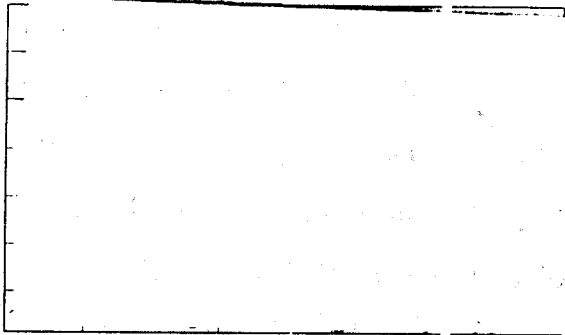
문서번호 영이58550- /// >

시행일자 2000. 7. 31. (년)

경유

수신 수신 ~~번호~~ 내보김지

참조 (제1안)



제목 건축신고(증축)에 따른 협의

1. 우리 동 관내 영등포동4가431-6외4필지상 건축물에 건축신고(증축)가 접수되어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면허사항임을 유념하여 관할 현 처리바랍니다.

가. 건축물 현황

- 대지위치:영등포동4가431-6,7,12,13,432-11
- 대지면적:1,464.00㎡,건축면적:1,086.83㎡,연면적:7,170.44㎡
- 건폐율:74.23%, 용적율:479.87%
- 주 용도:주차전용건물
- 지역지구: 중공업지역,상세계획구역

나. 신고현황

- 건축면적:36.22㎡,연면적:36.22㎡
- 용도:업무시설
- 구조: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다. 협의사항

- 상세계획구역안에서 건축신고(증축) 관계처리에 대하여 협의=>도시관리과
- 소방법관계 협의에따른 관할소방서 통보.

- 첨부 1. 건축신고서 사본1부(도시관리과).
2.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사본1부(영등포소방서) 끝.


영 등 포 제 2 동 장

원본내조필

확 인 서

본인은 2001. 6.23일 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영이58550-1112(2000. 7. 31)호의 공문서를 제출시
이미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공문 삭선 부분에
2001. 6.23일 본인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인하여 공문의 내용에는 일자의 가감도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01. 6. 23.

확인자 지방건축서기보 맹남제 

확 인 서

소속 : 영등포구청 건축과

직급 : 지방건축서기보

성명 : 맹 남 재

제목 : 광희관 구의원님의 자료요구의 건

영이 58550-1112(2000.7.31)호의 공문서에 대하여
원본을 대조한 결과 수정한 부분 4군데 중
도장이 찍혀 있는 곳은 3개소가 아닌 4곳에 찍혀있으며
요구하신 자료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1. 7. 11

답변자 맹 남 재



확 인 서

소속 : 영등포구청 대림1동사무소

직책 : 주무주사

직급 : 행정6급

성명 : 우영철

상기 본인은 2000. 7. 31 영등포2동 주무주사로 재직할 당시 "영등포동 4가

431-6"외 4필지상 증축신고에 따른 업무 협의 결재시 당시 건축담당

맹남재의 기안문서에 내부결재 없이 올라온 문서의 "수신처참조"를

"내부결재"로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처리바랍니다"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로 수정하여

"수신처:도시관리과, 영등포소방서"를 삭제한 것은 "제2안" "제3안"

별도로 수신처에 기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2번 수신 할 수

없어 문맥상 제1안을 내부결재를 수정하였으며 문서가 담고있는

근본취지는 바뀐 것이 아니었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2001. 7. 10.

확인자 : 지방행정주사 우영철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제목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부적정 사례</p> <p>가설건축물축조신고처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코자 하는 건물 배치도와 평면도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관할 동장이 신고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신고수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영등포구 영등포2동사무소에서는 영등포동4가 429-9호 건축주 김진현(신세계백화점)에서 2000.8.1일 신고한 가설건축물신고서를 동년 8.24일 신고처리 완료 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필수 첨부도면인 평면도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관계 법에 따라 처리바람, 담당공무원 문책요</p> <p>*첨부서류 : 신고처리서류 사본 1부 건축법 시행규칙 1부</p>	
<p>건 축 과</p>	<p>제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부적정</p> <p>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접수받아 처리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69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4항 제반규정에 의거 적법한 경우에 신고처리해야 함에 있어 영등포2동사무소에서는 2000.8.1일자 영등포동4가 429-9호 건축주(신세계백화점) 김진현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접수 받고 2000.8.24일 신고처리를 완료하였으나,</p> <p>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의하면 너비는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 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p> <p>적법 주차면이 5면 이상 있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주차장 설치위치의 대지길이가 28.4m이고 지하출구 옥탑부분의 벽과 장애물 간격이 6.6m이며 잔여주차면 길이가 21.8m이므로 이 잔여길이 상으로는 5대의 주차면적이 나올 수 없고, 3대를 연접배치하여 설계함으로 부당하게 신고처리 한 사실이 있으며,</p>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 의거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도면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의 도면을 보면 주차면 규모(m)가 표시되지 않았고, 실제 현황에 맞지 않는 설계도면이 첨부된 가설건축물신고서를 접수받아 부적절하게 신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1, 2번의 적법여부를 정밀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위법시원상복구하고 관계공무원 징계조치</p> <p>*첨부 : 건축법 제69조 1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1항 1부</p>	
<p>건 축 과 감사담당관</p>	<p>제목 : 공무원 허위 답변</p> <p>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허위 답변 처리번호 행정17번</p> <p>제목 : 조정면적 기준 부적격</p> <p>감사지적사항 : 신세계백화점의 건축물 조정면적의 토심은 1m이상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현장확인 결과 토심 깊이가 65-70cm로 확인이 되어 감사 지적을 하였음</p> <p>조치결과 : 조정 토심깊이에 대하여는 당시 영등포구건축조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토심 깊이 1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상조경의 경우에는 적용규정이 아님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전년도 답변과 달리 서울시건축조례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토심깊이가 1m 적용은 옥상조경에만 국한되어 있고' 라고 하고 그 후 '99.7.31일 동 조례에서 옥상조경 식재 기준이 폐지되었다 라고 답한 적도 있습니다.</p> <p>2000.6.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9호로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에 대하여 토심관계 조경기준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동 고시 이전에는 옥상조경에 대한 토심 깊이만이 규정되어 있었고 토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은 곤란하다고 답한 적도 있습니다.</p> <p>이러한 말과 같이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p> <p>서울시 문서번호 건지 58550-10719 시행일자 1999.9.14 일 수신 받는 곳 참조 제목 질의해서 알림</p>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축과 감사담당관</p>	<p>1.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도 동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질의요지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식재 대상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옥상조경의 방법 등 식재기준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옥상조경이 가능한지 여부</p> <p>3. 회신내용 금번 건축법(99.2.8) 및 동법시행령(99.4.30) 개정시 옥상조경 등의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되어 그동안 우리시 건축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옥상조경 식재기준을 '99.7.31일 건축조례개정시 폐지한 바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옥상조경기준을 고시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용역 중에 있는 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조경식재 기준 등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개정 전(99.7.31) 우리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으로써 동조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의 식재기준에 따라 식재를 하는 경우 옥상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옥상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이 공문이 '99.9.14일 심사관 검열이므로 각 구로 접수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도 조경에 대한 토심깊이 1m에 관한 법규들을 여기면서 허위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할 때마다 옥상조경 토심을 말하며 토심 제한이 없다라고 하다가 토심이 확인되면 옥상조경이 아니라 지상 조경이라 말합니다.</p> <p>본 감사지적사항은 지하에 건축물이 있고 지상에는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지상조경이라도 옥상조경에 준하는 토심 1m 이상으로 식재하여야 함에도 허위보고만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대상과 관련하여 허위로 답변을 한 공무원 징계요구 및 서울특별시 건축행정분야로 감사조치 할 것이며 조속히 시정 요함</p> <p>*첨부 :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서(처리번호 행정 17번) 1부 현장확인서 1부 2000년 감사지적사항 1부</p>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96.1.18, 99.5.1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98.9.29, 99.5.11>

⑤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99.5.11>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제 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법5454, 99.2.8 법5895>
-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부령제251호 일부개정 2000. 07. 29.]

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96·6·29]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2·9·5]

2000.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대장



제출자 : 건축과장 이 건 기

처리 번호	개 목	감사지적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부서	조 치 결 과	비 고
행정 17	조경면적 기준 부적격	-영등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건축물의 조경면적의 토심은 1m이상 적용하여야 한다고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통보를 받아(감사16070-790,2000.6.21 일자) 현장 확인한 바 조경의 토심깊이가65~70cm로 확인되 었음.	-이러한 위법사항은 관 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법령위반사항으로서 이를 옹호 또는 묵인한 이종헌 도시관리국장과 곽계공무원에 대하여, 장제조치 요구	건축과	<조치완료> -조경의 토심깊이에 대하여는 당시 영등 포구건축조례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 거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토심깊이 1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시 조경의 경우에는 적당 규정이 아 님	

제목 : 신세계 백화점 조경시설 토심 확인의 건

○ 일 시 : 2000. 6. 27(화) 11:30경

○ 장 소 :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 내 용

- 조경시설 토심확인결과 깊이가 67 Cm임을 확인함

2000. 6 27

확인자 의원

곽희관

(Handwritten signature)

地方行政主事補

李憲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2000. 6. 28 .

각시위원

대상기관	남 사 지 국 사 항	비 고
<p>도시관리국 건축과</p>	<p>제목 : 조경면적 기준부적격</p> <p>건축허가에 따른 조경면적의 토심은 1M이상 적용하여야 한다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감사16070-790. 2000.6.21일자)현장확인한 바 조경의 토심깊이가 65~70cm로 확인되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이러한 위법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법령위반사항으로서 이를 옹호 또는 묵인한 이종현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요구</p>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보건위생과	<p>제목 : 근무상황부 일시소급 허위기재 및 직무태만 공무상기밀 누설 등 보건소장 최병찬은 행정사무감사기간(2001.6.21~6.28)중 가사정리로 2001. 6. 22 오전 10:30 조퇴를 하였으나 근무상황부에는 13:00부터 연가(반가)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구청장 결재까지 받았으나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자 근무상황부에 결재된 조퇴시간을 무단으로 화이트를 사용 10:30부터 조퇴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10:30부터 사적인 일로 퇴청시에는 반가가 아니고 조퇴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가로 사용한 것은 근무평정영향, 다음연도에 연가일수 1일 추가 제외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위 행위를 고의적인 변조로 판단되며 수정사유를 묻자 본인이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서무주임에게 전가시키는 등 기관장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림2동 706-1 소재 같은 개설장소에 2명 명의의 서울북지한방병원 개설허가서는 병동, 병실 및 진료실이 4~5층으로 구분되었으나 타 양방 개설자와 개설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진료실과 병동 병실이 혼합되어 전 층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감사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는 등 오히려 불법을 감싸고 비호하며 감사를 피해 가기 위해 감사증 수감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시킨 행위는 선서규정을 위배한 것임</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엄중문책(인사조치 등) 할 것</p>	
토 목 과	<p>제목 : 아스팔트포장공사 부적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공사(아스팔트 포장공사)로 노면에 교통방향표시(기준)가 준공검사시 동시에 원상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으며 2. 2000.11월에 공사하여 준공된 곳으로 일반민원인들이 자유로 표시하는 등 (구청에 독촉하여도 현지 시정을 안함)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영등포동7가 송광호철판구이집옆 도로) 2001.6.29 현재까지도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공사시공부서에서 사전조치하여 준공시 동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요함(30m 이상 도로는 포장완료 동시에 공사하고 있음을 참고할 것)</p>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청소행정과	<p>제목 : 추경예산편성의 건</p> <p>환경미화원 휴게소 신축 2건(신길동 3741-11 165㎡, 대림동879-8 132㎡), 중축 1건(신길동 3741-11, 492㎡)</p> <p>추경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추경예산 편성되었다고 보며 시설비 및 부대비 493,910,000원의 예산은 우리구 재정상 큰 금액으로 이 예산이 꼭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면 설계용역을 득한 다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한 예산편성을 하였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해당동 구의원, 동장과 협의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p>	
자치행정과	<p>제목 : 각동별 주민복지센터 회비 및 수강료 내역</p> <p>구민들에게 건강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주민복지를 위해 각동 주민복지센터가 개관되어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비와 관리비, 회비, 수강료 명목으로 현재까지 구전체 72,554천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주민복지를 위해 설립된 원래 취지를 벗어나 사설학원처럼 유료화 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프로그램 신설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이용이 극히 저조하게 운영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적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함.</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 강사수당 인상과 운영비지원을 증액하여 질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2. 주민복지센터를 수강료 없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p>	
교통행정과	<p>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부적격</p> <p>1. 주민주차장(7개동)건 주차장관리에서 부주의 또는 급발진에서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의 운영지침이 없어 큰 사고가 있을 시 책임한계가 없으며</p> <p>2. 주차면수에 의거 보수 및 근무자수가 제각기 다르므로 이에 따라 기본봉급과 현지 사무비용 등 최저운영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운영방법 및 지침이 없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 운영방법 및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시달 요망 2. 감사담당관 지적중 35대 미만 공동주차장은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 바 부족한 면의 해당동은 추가면수 조정을 요함.</p>	

각 동별 회비 및 수강료 내역

(단위 : 원)

동 명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회비 및 수강료	개강부터 현재까지 받은금액
계				72,554,000
영등포제1동	체력단련실	202	10,000원	2,020,000
영등포제2동	체력단련실	122	10,000원	1,200,000
여 의 동			없 음	
당 산 1 동	체력단련실	540	10,000원	5,400,000
당 산 2 동	소 계			345,000
	꽃꽃이	45	5,000원	225,000
	구연동화	60	2,000원	120,000
도 립 1 동	소 계			2,815,000
	스포츠 댄스	115	5,000원	575,000
	체력단련실	224	10,000원	2,240,000
문 래 1 동			없 음	
문 래 2 동			없 음	
양 평 1 동	소 계			15,984,000
	차명댄스	135	5,000원	1,350,000
	또개질 교실	41	5,000원	205,000
	서예교실	48	5,000원	240,000
	체력단련실	904	15,000원	13,560,000
	가요교실	92	5,000원	629,000
양 평 2 동			없 음	
신 길 2 동	체력단련실	1,402	20,000원	28,180,000

동 명	프로그램명	1개월 평균 수강인원	회비 및 수강료	1개월 회비
신길 3동			없음	
신길 4동			없음	
신길 5동	체력단련실	1,169	10,000원	11,690,000
신길 6동			없음	
신길 7동			없음	
대림 1동	소 계			1,890,000
	서예교실	48	5,000원	240,000
	탁구교실	120	10,000원	1,200,000
	스포츠댄스	45	10,000원	450,000
대림 3동	소 계			3,030,000
	스포츠댄스	32	3개월 50,000원	1,600,000
	서예	27	3개월 10,000원	270,000
	노래교실	56	3개월 15,000원	840,000
	생활영어	32	3개월 10,000원	320,000

※ 신축동 : 도림2동, 신길1동

중축동 : 영등포3동, 대림1동

시범동(당산1동, 대림1동)은 3월부터 연재까지 기재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청소행정과	<p>제목 : 동별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일지 미결제건</p> <p>2001. 6.16 ~ 6.25까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일일기록부를 결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구에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게 수의계약되어 우리구 재정수입 확보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등 지도감독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며, 월 145,626,000원 년 1,747,507,200원 인건비+차량유지비를 순수재활용품 수거비용으로 투자되었으나, 약 8%인 14,129,850원의 판매수입은 실패한 청소행정이므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계획과 예산집행을 재검토하여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검토하기 바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일일기록부는 매일 매일 결제를 하고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이나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은 말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복무규정에 의거 인사조치 바람,</p> <p>또한 재활용품 판매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서 단가를 현저히 낮게 산정한 것은 그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주기 바람.</p>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21세기를 열어 가는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업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1. 6. 22. (금) ~ 6. 28. (목)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3호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
시종덕	신길철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안주영 윤태봉, 이종환, 조길형, 최락희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 사 대 상	비 고
2001. 6. 22 (금)	영등포구청 제 2 감사장	생활복지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 종합평가 - 강평
2001. 6. 23. (토)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2001. 6. 24. (일)		공 휴 일	
2001. 6. 25. (월)		건설교통국	
2001. 6. 26. (화)		도시관리국	
2001. 6. 27. (수)		도시관리국	
2001. 6. 28. (목)		공개질의답변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대 상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업무 · 노인복지 관련시설 설립 및 건립 · 경로 우대중노인 교통수당에 관련된 업무 · 청소년 및 아동시설 복지사업(구립어린이집·구립독서실포함) ·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지 확인

대 상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비 고
<p>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p> <p>(환경관리과)</p> <p>(청소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실업대책추진 상황의 관리 및 처리 등(취업정보은행운영상태) ·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 가스 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계획 · 구인·구직 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 공공근로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환경유발부담금 포함)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생활공해 (소음·진동,분진,악취 등)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과정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조정, 납부에 관한 사항 · 청소 관련 세외수입의 현계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재활용 이행 등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공중 및 유료화장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차량 배치,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p>현황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감사 현지확인</p>
<p>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p> <p>(건 축 과)</p> <p>(지 적 과)</p> <p>(공원녹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계획 및 정비업무 · 상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전·월세 용자금 지원 및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징수 ·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 · 재개발 사업 관련 사항 ·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과태료,이행 강제금 부과 등) · 구·동청사,복지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 · 일반지역 구역내 위험건물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조사처리 ·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부과 ·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선정 ·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 근린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공원내 공중화장실 실패) · 가로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 거리 환경미화 및 노변 꽃심기 · 체육관련시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설치 및 유지관리 	

대 상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비 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지하도 상가관리 · 하천 관리 · 지하매설물 관리 · 도로점용료(공간) 및 부당이득금 조정징수 · 도로 일시 사용허가 및 관리 · 가관점 등 가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감사 현지확인
(토 목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공사 ·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 빗물펌프장·수문 기전설비 안전점검 계획 · 지하수개발·이용 원상복구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채납자 징수관리 및 수납 소인 · 준설업무 관련 사항 · 재단관리계획 총괄조정 · 재단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전달, 공조체계 구축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마을버스(한정면허)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 증진 ·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관리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업무 ·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 주차단속원 지도감독(공익요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 주정차위반 과태료 채납에 관한 사항 · 채납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정비업체 지도단속 ·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과 관련 주차장설치여부 및 운영상태 · 간이정비업소(카센터) 운영실태(폐유 등 처리 관련 점검사항)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8.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토 목 과	<p>제목 : 도로 등 토목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작업에 대한 개선책으로(침하, 부실시공) 각 업체들에 책임시공하도록 INCENTIVE 적용 ○ 소파공사시 지연으로 인해 공사량이 커지고, 많은 민원유발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다지기 등 유념 ○ 소파 민원 발생시 신속한 조치 요망 	
교통지도과	<p>제목 : 자료요청에 대한 잘못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자료요청에 관해서 자료 때문에 31명의 직원을(교통단속요원) 근무도 보내지 않고 일 못하게 하는 주무과장의 판단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UTER의 활용으로 시간단축 ○ 교통사고 유발지역 민원 및 환경오염의 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의 적극적 단속 ○ 대형화물트럭, 중기의 위반시 견인에 해당하는 조치 요망 	
건설교통국	<p>제목 : 안양천변 사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트럭 주차장을 안양천변에 설치하여 대형화물트럭의 불법주정차 환경오염유발 교통사고유발 민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의 주차장허가 내용들을 참고하여 최대한 주차장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사회복지과	<p>제목 : 2001년 중증장애인 설 위문품 수령자 확인 철저</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동건 위문품을 전달함에 있어 반드시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인 서명이 빠진 자가 많아 지급여부 문제소지 발생됨, 차후로는 수령인 서명 철저히 받도록 함이 마땅할 것임.</p>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청소행정과	<p>제목 : 청소대행업체 노사분규로 인해 4-5일씩 청소하지 못하였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계약위반 시 처벌규정 명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 강구할 것</p>	
공원녹지과	<p>제목 : 신우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석 폭이 균일하지 않음 ○ 펜스 기초면처리 불량 ○ 노인정 올라가는 길 포장 ○ 가로등 기초 윗부분 파손 ○ 미끄럼틀 바닥볼트 제거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기로 절단하여 폭이 균일하도록 조정 ○ 시멘트 몰탈로 정비 ○ 고압브러 포장 (철거자재 재활용) ○ 시멘트 몰탈로 파손부분 정비 ○ 금각 둥근볼트로 교체 	
공원녹지과	<p>제목 : 식수하자 제시공</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적기에 식수한 것이 기상변화로 인하여 고사한 나무를 적기에 식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공원녹지과	<p>제목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양평동4가 로타리에서 노들길 방향, 일명 당재길)</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산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개방, 공원화하는 과정과 인접 양평동 가로공원 앞 도로와 연계하여 도로경계석 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주변 정리 요망</p>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건축과	<p>제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림2동 청사 신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3층 골조 타설 레미콘 슬럼프 테스트 결과 슬럼프 값이 18cm로 설계 슬럼프 값 15cm의 허용오차 17.5cm를 상회 o 1층의 바닥의 PVC슬리브 제거시 콘크리트 손상 우려됨 o 현장내 자재정리 미흡 o 비산면지막, 낙하물방지막 등 현장가시설 설치 미흡 - 대방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주변 정리상태 미흡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콘크리트 타설시 슬라브의 일반적인 슬럼프값인 15~18cm에 해당되나, 슬럼프 테스트한 시료의 소요강도 확보 여부를 추정키 위해 만든 시험물드를 현장과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하여 압축강도를 확인 o 향후 제거되는 일반 오·배수관용 슬리브에 대해서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시공조치 o 철저한 현장점검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현장관리 시행 o 비산면지막 : 재정비 o 낙하물방지막 : 2층바닥 콘크리트 양생 완료 즉시 설치 o 인접 공원 내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 	
교통행정과	<p>제목 : 20M 이상 도로변 거주자(상근자) 주차장 설치분 재검토 요망</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p>20M이상 도로변 거주자(상근자) 주차장 설치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니 재검토 요망됨</p>	
도시관리과	<p>제목 : 무허가건물 정비 철저</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관내 무허가건물 2000년, 2001년 미정리분 정리 요망</p> <p>2000년 - 104건</p> <p>2001년 - 80건</p>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청소행정과	<p>제목 : 동 기능전환에 따라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12M미만) 청소 및 민원 처리 미비 ○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 미비 ○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미비 ○ 동 재활용수집소 관리 미비 ○ 동 재활용 미화원 및 보조인력(공공근로, 취업인부) 관리 미비 ○ 주민협조사항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미비 ○ 구 직영지역 미화원 관리 및 작업배치 미비 ○ 구 직영지역 종량제봉투 배부 및 조정결의 미비 ○ 건축폐기물 발생신고 접수 및 처리 미비 <p>위와 같은 문제점이 과다함.</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12M이하) 청소 철저 ○ 주택가 등 청소취약지역 관리 철저 ○ 동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철저 ○ 민원사항 처리 및 순찰활동 철저 	
건설교통국	<p>제목 : 명예감독</p> <p>명예감독관으로 해당 구의원과 주민1명을 임명하였으나 공사시행시 전혀 보고 및 협의가 없음.</p> <p>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감독의 임무 -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주요공정에 단계별로 명예감독관이 참여하여 투명한 공사진행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 주민의 건의, 시정 요구 등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처리 ○ 대책 - 신망 있고 실질적 감시능력이 있는 지역인사 선정 ○ 공사시행시 수시로 명예감독관을 찾아가 공사설명 및 감독업무역할 설명과 문제점 등을 파악 보고하여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감사담당관	<p>제목 : 동장순찰 득려 및 일지 정리</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동장은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지적사항 등 제반문제점 해결에 경주할 것을 요망함.</p>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도시관리과	<p>제목 :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경계석 이음부 파손(광장아파트) ○ 횡단보도 앞 기존 측구 물고임(광장아파트) ○ 마감부 조각블록 방향 불일치(산책로) ○ 블록조각 미설치로 공간 발생(산책로) ○ 휴렛패커드 앞 물고임(산책로) ○ 점자블록 선형 불일치(유공빌딩 앞 등) ○ 마감부 정밀절단(유공빌딩 앞 등) ○ 횡단보도 앞 기존 측구 물고임(신송빌딩 앞) ○ 환기구 앞 매 밝혀 고사(여의도종합상가)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부에 대하여 예폭시 등으로 시험 시공한 후에 보수공법 결정할 것(광장아파트) ○ 치수과에서 조치할 것(광장아파트) ○ 마감부 블록 재시공(산책로) ○ 공간에 블록조각 삽입(산책로) ○ 경계부 블록을 두루 정리하고 배수처리(산책로) ○ 점자블록 선형 맞도록 재설치(유공빌딩 앞 등) ○ 마감부 정밀하게 재시공(유공빌딩 앞 등) ○ 치수과에서 조치 할 것(신송빌딩 앞) ○ 재설치(여의도 종합상가) 	
치수과	<p>제목 : 도림3빗물펌프장법면 정비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인트 거리(20M) 불일치 ○ 시공 조인트 마감 시공 불량 ○ 블록담장 기초부분 마감 불량 ○ 도림3 유수지측 블록 담장 줄눈 시공 불량 ○ 유수지측 옹벽 사면 토공 정리 불량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옹벽 시공시 정밀 시공토록 할 것 ○ 시공사에게 조인트 부분에 대하여 치핑 후 실란트 주입토록 재시공 할 것 ○ 시공사에게 담장 기초부분 정리 할 것 ○ 시공사에게 유수지측 블록 줄눈 재시공 할 것 ○ 시공사에게 옹벽사면 토사 정리 할 것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교통지도과	<p>제목 :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기능전환으로 주차단속이 구로 이전됨으로 지선도로와 이면도로 및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주차단속이 안되어 민원 및 주민들의 불편이 동 기능전환 이전보다 몇 배 더 많음 ○ 동 기능전환 후 업무이관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 요청시 효율적인 단속 애로 ○ 거주자(상근자)우선주차지역 신청접수(동)와 관리업무(구)의 이원화 ○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단속요구 민원증가 → 구청과 원거리 동 처리시 지연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강화 ○ 하반기 전지역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이 실시되면 거주자(상근자)우선주차지역은 관리가 되어 민원감소가 예상되나, 주차구획선 제외지역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으로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코자 함 ※ 내집 주차장 앞 불법주차 신고시 우선 처리 	
도시관리과 토 목 과	<p>제목 : 강남고속화도로 노선 조정 건의</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우리구 관내 강남고속화도로 안이 서부간선도로 제방에 설치안으로 공람 공고된 노선을 우리구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소음 공해 및 조망권 등으로 대책이 요구됨</p>	
토 목 과 도시관리과	<p>제목 : 양평동 재건대 건물 철거</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양평동 재건대 건물이 법원에 기각으로 조속한 기일 내 보상 및 이주대책 세우고 정리 요망</p>	
건 축 과	<p>제목 : 건축물 부설 주차장 대장 미비</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건축물부설 주차장대장과 가옥대장상의 차이점 정리요망</p>	